화 성 시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시 보

선람	기관의 장

제 199호

2026년 10월 28일 (수)

차 례

공 고

화성시 공고 제2026-353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정정)(병점구 병점동 892-2번지)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40호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42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팔탄 제2026-42호, (주)케이티]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35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통보 공시송달(주○혜)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21호	화성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22호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23호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24호	화성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25호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26호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27호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28호	화성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29호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30호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31호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32호	화성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회람									

발행 : 화 성 시 편집 : 언론담당관

화성시 공고 제 2026-353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정정)

화성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28.

화 성 시 장

1. 공 고 명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2. 사업내역(건축허가 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892-2	1,360.30	816.88	6,799.65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3. 안전점검 내용 (과업내용)

가. 안전점검대상

안전점검 대상	안전점검 대상	안전점검 비용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892-2	- 정기안전점검(3회) - 천공기(2회) - 타워크레인(4회)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2회)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2회) - 높이 2m 이상 흙막이지보공(2회) -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2회)	57,234,000원 (VAT 포함)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화성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등록명부 A 적용)

※ 등록명부 공고 : 화성시 공고 제2026-2620호(2026. 7. 22.)

나. 결정방법

1) 「화성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사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함.

2) 참여한 수행기관이 2개사 이상일 경우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함.

○ 평가적용기준 : 붙임「화성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참고

3) 지정공고 참여 수행기관이 없거나 2)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건축주)가 추천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4) 균형가격 1번째 근접자가 다수인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을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추첨을 통하여 지정함.

※추첨장소: 화성시청 건축과, 대상자 개별연락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1. 2.(월) 10:00 ~ 16:00 ※시간엄수(12:00 ~ 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화성시청 본관 4층 건축과 방문접수**(건축허가팀 황규민 주무관)**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서류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

1)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붙임 서류(자기평가서 등 평가자료는 제외) 포함] 1부. [양식2]

2) 안전점검용역입찰서 1부. [서식15]

6. 개찰결과 : 2026. 11. 3.(화) 14:00 이후 유선통보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1. 3.(화) 14:00 ~ 16:00

나. 열람방법 : 화성시청 건축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건축과(☎031-5189-2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성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양식 1부. 끝.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일반사항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화성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사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2.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table>
<tr><th>구 분</th><th>평가기준</th></tr>
<tr><td>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td><td>
○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아래 가격평가 방법만으로 점수 산정
<table>
<tr><th>심사항목</th><th>배점범위</th><th>세부기준 및 배점</th></tr>
<tr><td rowspan="11">입찰가격</td><td rowspan="11">100점</td><td>· 균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td></tr>
<tr><td>· 균형가격 2번째 근접 : 97점</td></tr>
<tr><td>· 균형가격 3번째 근접 : 94점</td></tr>
<tr><td>· 균형가격 4번째 근접 : 91점</td></tr>
<tr><td>· 균형가격 5번째 근접 : 88점</td></tr>
<tr><td>· 균형가격 6번째 근접 : 85점</td></tr>
<tr><td>· 균형가격 7번째 근접 : 82점</td></tr>
<tr><td>· 균형가격 8번째 근접 : 79점</td></tr>
<tr><td>· 균형가격 9번째 근접 : 76점</td></tr>
<tr><td>· 균형가격 10번째 근접 : 73점</td></tr>
<tr><td>· 균형가격 11번째 이하 : 70점</td></tr>
</table>
-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이하 “입찰가격”이라 한다.)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하며,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에 따라 점수를 산정(원단위 이하 절사)

※ 입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 87.745% 이상,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비용 × 87.745% 미만 또는 공고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입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하고 균형가격 산출에서 제외

- 균형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응모업체 수 3개사 이하: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

· 응모업체 수 4개사 이상: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균형가격과 입찰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

- 입찰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이후 점수로 산정

- 균형가격 1번째 근접자가 다수인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을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추첨을 통하여 지정한다.
</td></tr>
<tr><td>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td><td>○ 총 괄</td></tr>
</table>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60점
입찰가격	40점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60 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60$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40 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40\times\{1-2\times(\frac{\text{입찰가격}}{\text{입찰평균가격}} - \frac{95}{100})\}$ · 입찰평균가격: 각 업체의 입찰가격 합계/입찰자 수 · 입찰가격이 입찰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계	100 점	

2.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3">가.
참여
기술인
[45]</td><td>(1) 사업
책임기술인</td><td>(18)</td><td>-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td></tr>
<tr><td>(나) 경력</td><td>8</td><td>-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table>
<tr><td>10년이상</td><td>10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td></tr>
<tr><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able></td></tr>
<tr><td>(다) 실적(건수)
실적(금액)</td><td>5
5</td><td>-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금액
<table>
<tr><td>20건이상</td><td>20건미만
17건이상</td><td>17미만
15건이상</td><td>15건미만
12건이상</td><td>12건미만</td></tr>
<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
<table>
<tr><td>4억원이상</td><td>4억원미만
3.4억원이상</td><td>3.4억원미만
3억원이상</td><td>3억원미만
2.4억원이상</td><td>24억원미만</td></tr>
<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4"></td><td>(2) 분야별
책임기술인</td><td>(18)</td><td>-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td></tr>
<tr><td>(가) 자격</td><td>2</td><td>-「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tr><th>특급</th><th>고급</th><th>중급 이하</th></tr><tr><td>2.0</td><td>1.0</td><td>0.5</td></tr></table></td></tr>
<tr><td>(나) 경력</td><td>6</td><td>-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table><tr><th>10년이상</th><th>10년미만
9년이상</th><th>9년미만
8년이상</th><th>8년미만
7년이상</th><th>7년미만</th></tr><tr><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td></tr>
<tr><td>(다) 실적(건수)
실적(금액)</td><td>5
5</td><td>-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 금액
<table><tr><th>20건이상</th><th>20건미만
17건이상</th><th>17미만
15건이상</th><th>15건미만
12건이상</th><th>12건미만</th></tr><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table><table><tr><th>4억원이상</th><th>4억원미만
3.4억원이상</th><th>3.4억원미만
3억원이상</th><th>3억원미만
2.4억원이상</th><th>24억원미만</th></tr><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table>*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4"></td><td>(3) 분야별
참여기술인</td><td>(9)</td><td>- 분야별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td></tr>
<tr><td>(가) 자격</td><td>2</td><td>-「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tr><td>고급이상</td><td>중급</td><td>초급</td></tr><tr><td>2.0</td><td>1.5</td><td>1.0</td></tr></table></td></tr>
<tr><td>(나) 경력</td><td>3</td><td>-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table><tr><td>7년이상</td><td>7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table></td></tr>
<tr><td>(다) 실적(건수)</td><td>4</td><td>-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건수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
<table><tr><td>20건이상</td><td>20건미만
17건이상</td><td>17미만
15건이상</td><td>15건미만
12건이상</td><td>12건미만</td></tr><tr><td>4.0</td><td>3.8</td><td>3.6</td><td>3.4</td><td>3.2</td></tr></table>*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20]</td><td>(1) 정기안전점검
실적(건수)
실적(금액)</td><td>(10)
(10)</td><td>-「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 금액
<table>
<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
미만</td></tr>
<tr><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
<table>
<tr><td>5억원이상</td><td>5억원미만
4억원이상</td><td>4억원미만
3억원이상</td><td>3억원미만
2억원이상</td><td>2억원미만</td></tr>
<tr><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td></tr>
<tr><td rowspan="3">다.
신용도
[10]</td><td>(1) 부실벌점 및
계약 불이행
평가</td><td>(4)</td><td>- PQ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감점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당해 용역 차기년도 PQ 시 감점
(1회 이상 계약미체결 1점 감점)</td></tr>
<tr><td>(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td><td>(3)</td><td>-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td></tr>
<tr><td>(3) 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
<tr><th>점수</th><th>회사채
신용평가
등급</th><th>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th><th>기업 신용평가등급</th></tr>
<tr><td rowspan="5">3.0</td><td>AAA</td><td>-</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A+,
AA0,
AA-</td><td>A1</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0</td><td>A2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 rowspan="3">2.9</td><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B0</td><td>A3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 rowspan="2">2.8</td><td>BB+,
BB0</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td><td>B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2.7</td><td>B+,B0,B-</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2.6</td><td>CCC+이하</td><td>C이하</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2">라.
투자 및
기술개발
실적
[10]</td><td>(1) 투자실적</td><td>(8)</td><t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table>
<tr><td>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
0.5%이상</td><td>0.5%미만</td></tr>
<tr><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able></td></tr>
<tr><td>(2)기술개발
실적</td><td>(2)</td><td>-「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1.0)+(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6)+(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3)
<table>
<tr><td>구분</td><td>3년미만</td><td>3년이상 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r>
<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
<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
</table></td></tr>
<tr><td rowspan="2">마.
업무중첩
도
[15]</td><td>(1)책임기술인</td><td>(10)</td><td>-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에 따라 평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tr><td>6월 미만</td><td>6월이상
8월미만</td><td>8월이상
10월미만</td><td>10월이상
12월미만</td><td>12월이상</td></tr>
<tr><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td></tr>
<tr><td>(2) 분야별
책임기술인</td><td>(5)</td><td>-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에 따라 평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tr><td>6월 미만</td><td>6월이상
8월미만</td><td>8월이상
10월미만</td><td>10월이상
12월미만</td><td>12월이상</td></tr>
<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td></tr>
</table>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 가점 [0.8]	(1)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2) 지역 안전진단기관	(0.5)	- 화성시에 본점을 둔 업체 가점 부여(0.5점)

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일반사항

1.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등록명부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2.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3. 법, 령, 규칙 및 본 평가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이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상의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말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해당용역 중 준공*된 용역 실적**을 의미하며. 아래 라. 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 준공이라 함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건축물의 1~3차 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각각 완료하여 최종준공이 된 경우를 의미함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에 의한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위 '라'항의 아래와 같다

바.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당해 PQ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인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다.

2.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이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상의 안전점검용역을 말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용역 수행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준공이라 함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건축물의 1~3차 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각각 완료하여 최종준공이 된 경우를 의미함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용역수행실적 제출서류는 위 (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라항'의 아래와 같으며, 실적산정 시 발주자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급(하도급)받은 내용을 같은 업종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재(부분)하도급한 부분은 불인정한다.

3.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내역을 별첨 [양식 10]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소재지 지자체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PQ참여업체는 별첨 [양식 11]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내역을 작성 제출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PQ참여업체가 별첨 [양식 12]에 따라 작성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투자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라 함은 재무재표상의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합계 / 입찰공고일로부

터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하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를 별첨 [양식 13]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라.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년도부터의 해당자료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은 PQ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PQ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라. 기술개발실적은 최초지정자(최초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마.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등록증(등록원부 포함) 및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바. 기술개발실적의 가점해당 여부를 [양식 14]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의 가점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나.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건설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경력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9. 지역 안전진단기관 가점평가는 화성시에 본점이 위치한 안전진단기관 가점 0.5점 부여

10.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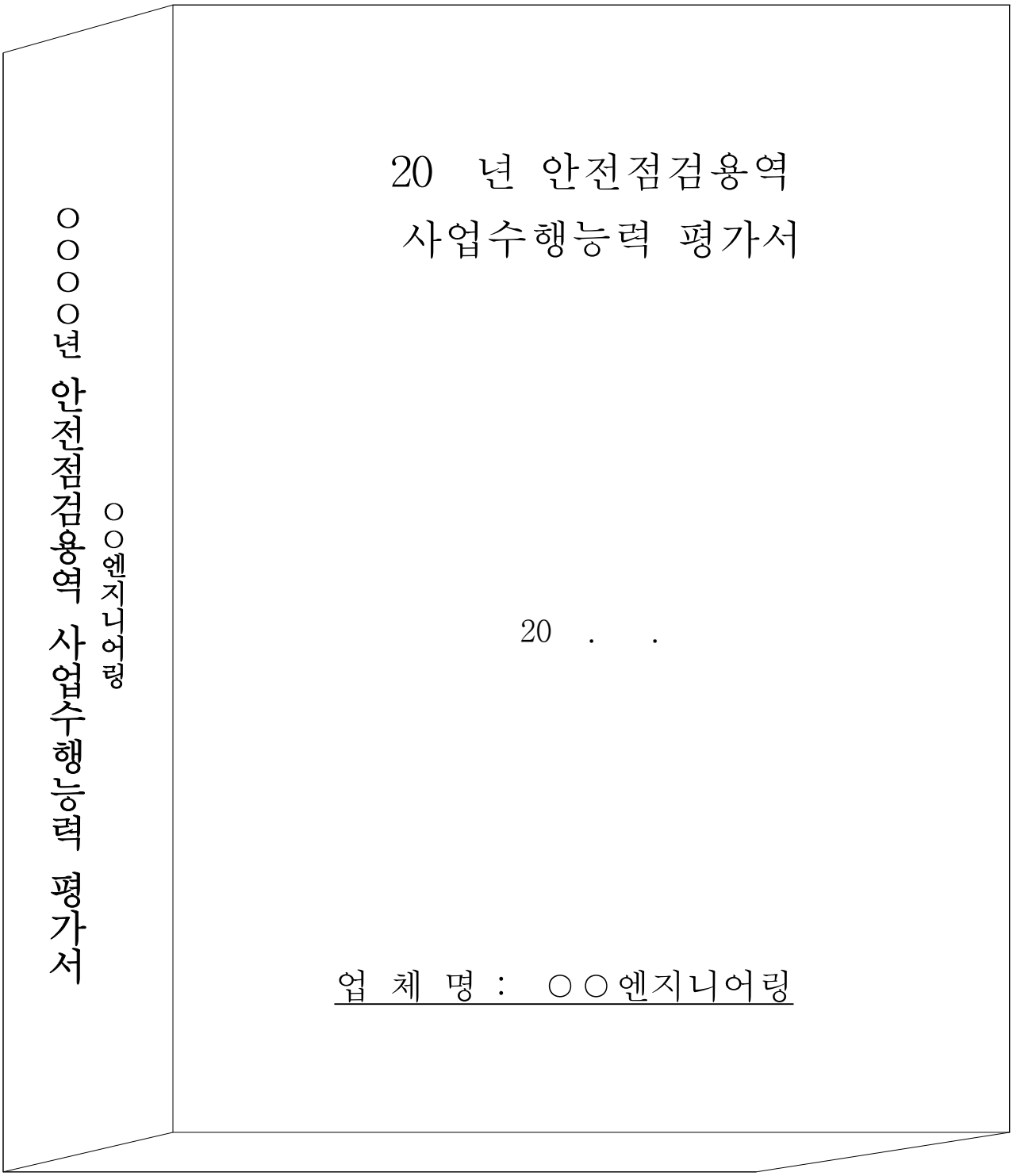
-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양식 2]
- 해당 용역의 종합평가표 [양식 3]
- 안전점검용역입찰서[양식 15]

※ 신청서 제출 시에는 세부평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별첨의 [양식]을 작성하고, 예비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청색

(양식 1)



(양식 2)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0 년 경기도 화성시 (정기,정밀,초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용역 지정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자기평가서 등 평가자료 1부.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FAX :
E-Mail :

(양식 3)

경 기 도 화 성 시 귀 하

종 합 평 가 표

업 체 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세부사항			배점한도	자기평가	화성시평가	비 고
가. 참여 기술자	(가) 등급		(1) 사업책임기술인	-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2			
			(3) 분야별참여기술인	2			
	(나) 경력		(1) 사업책임기술인	8			
			(2) 분야별책임기술인	6			
			(3) 분야별참여기술인	3			
	(다) 실적	건수	(1) 사업책임기술인	5			
			(2) 분야별책임기술인	5			
			(3) 분야별참여기술인	4			
		금액	(1) 사업책임기술인	5			
			(2) 분야별책임기술인	5			
	소 계			45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1) 안전점검		실적(건수)	10			
			실적(금액)	10			
	소 계			20			
다. 신용도	(1)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4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3)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0			
라.투자 및 기술개발실적	(1) 투자실적			8			
	(2) 기술개발실적			2			
	소 계			10			
마. 업무중첩도	(1) 책임기술인			10			
	(2) 분야별책임기술인			5			
	소 계			15			※
바. 가점	(1)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2) 지역 안전진단기관			(0.5)			
	소 계			(0.8)			
	합 계			100			

자기평가 란은 PQ참여업체에서, 화성시평가 란은 화성시에서 작성(이하 동일)

상기 종합평가표는 경기도 화성시의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적합하며[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용역 수행 업체(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 또는 발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가 아님] 신청자 자기평가평점이 위조·변조 등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4)

기술인 현황

일련번호	기술부문	전문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자격 및 학력구분	자격명	종목	근무기간	비고

※ 1. 일련번호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1부터 기재
2. 근무기간은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일치시킬 것
3. 비고란에는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기재
: 사책(사업책임기술인), 분책(분야별책임기술인), 분참(분야별참여기술인) 기재
4. 붙임서류
① 회사의 기구(조직)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연금관리공단) 각1부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5)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등 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자격	경력	실적		자격	경력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5	5					
						10년	20건	4억원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전문분야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정밀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초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건		원		
합 계		건		원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다', '1.라', '1.마'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6)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등 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자격	경력	실적		자격	경력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6	5	5					
					기술사	10년	20건	4억원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전문분야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정밀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초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건		원		
합 계		건		원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다', '1.라', '1.마'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7)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등 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자격	경력	실적(건수)	자격	경력	실적*(건수)	
					2	3	4				
					고급	7년	20건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전문분야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정밀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초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건		원		
합 계		건		원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다', '1.라', '1.마'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8)

참여기술인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등 급 / 전문분야	인 원 수						비 고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중급 기술인	초급 기술인	분야별 소계	
합 계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9)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업 체 명	배점한도		자기평가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건수)		실적(금액)	
	10	10	10(10)		10(5.0억)	
○○엔지니어링	10건이상	5억원이상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계	건	계	원

건축물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

순번	구분	용 역 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소 계			건		원		

※ 붙임서류

①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나'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0)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구 분		배 점	자 기 평 가		비 고
			감 점	평 점	
부실 벌점	① 용역업체	4			
	② 사업책임기술인				
	② 분야별책임기술인				
	② 분야별참여기술인				
계약불이행					
합 계		**4**			

※ 붙임서류 : 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구 분		제재명칭	제재기간	배점	자기평가	
					감점	평점
① 용역업체(안전진단)				3		
② 책임기술인	홍길동					
③ 참여기술인						
계				3		

※ 붙임서류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지자체, ②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③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2)

신용평가등급

업 체 명	신용평가회사	평가등급 (평가분야)	배점	자기평가	비 고
○○엔지니어링	한국신용평가정보	BBB+ (회사채 신용평가)	3		

※ 붙임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3)

투자실적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용역업체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 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		총매출액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양식 14)

기술개발 실적

구 분	기술명	최초 지정 또는 출원일자	경과기간	출원 인수	배점	자기평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합 계					2	

※ 붙임서류 :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및 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특허증(등록원부 포함)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5)

안전점검용역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용역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 - 1140호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만세구 관내 하천구역 내에서「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시정명령(2차) 처분을 하여야 하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28 일

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

1. 공 고 명 :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처분의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8. ~ 2026. 11. 11.(16일간)

3. 공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제95조(벌칙)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가. 위 처분(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이의 등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및「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강제 철거(행정대집행)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통지서는「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원상회복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화성시장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불변기간 180

일)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불변기간 1년) 할 수 있으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는바,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역	부서 및 전화번호
만세구(우정읍, 장안면, 양감면, 향남읍, 팔탄면)	만세구 안전건설과(031-5189-1068)

[붙임1] 공시송달 대상 및 현장사진

위치(지번)	하천명	행위자	위반사항	위반면적(㎡)	처분내용
팔탄면 지월리 741	발안천	미상	경작	270	원상회복

※ 위반면적은 화성시 공간정보시스템에 근거한 산축면적으로 실제 위반면적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1142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만세구청장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명	38호선
점용의 목적	통신관로 매설	점용기간	2035. 12. 31. 까지
점용의 장소	팔탄면 율암리 산149, 산46-3번지	점용면적	일시 : 246.4㎡ 기간 내 : 43.72㎡
점용물의 종류	관로	공사기간	착공일 ~ 60일
공사 방법	인력 및 장비	굴착 시 교통대책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차도 굴착
점용자의 주소·성명	㈜케이티	그 밖의 사항	팔탄 제2026-42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통보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주○혜
4.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위 반 행 위 내 역					
성 명	주 소	행위지	행 위	용 도	구 조	면 적 (㎡)	시정요구기한
주○혜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7안길 1*. B101호 (본오동)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송라리38*	신축	창고	파이프천막	44	2026. 10. 30.

5. 공고기간 : 2026. 10. 28. ~ 2026. 11 .11.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홍현아	전화번호	031-5189-7719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1호

「화성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소형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화재대응장비의 비치 및 지원 범위에 대해 열거함(안 제4조).

나. 지원이 가능한 화재대응 장비의 종류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다.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근거를 마련(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정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6. 11.

발 의 자: 정순영, 고병태, 송현미,
최태양, 신미정, 김기현,
유상희 (7명)

1. 제안이유

소형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대응장비의 비치 및 지원 범위에 대해 열거함(안 제4조).

나. 지원이 가능한 화재대응 장비의 종류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다.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근거를 마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기 타: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형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형리튬이온전지”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휠체어, 노트북, 보조배터리, 휴대용 전자기기 등 소형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로서 총 전지용량이 1,000와트시(Wh) 이하인 전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이하 “화재”라 한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화재대응장비의 비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합한 화재대응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사
3.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응장비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

8.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장비의 종류 및 기준) 제4조에 따라 비치하거나 지원하는 화재대응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중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기

2.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등을 받은 방연마스크, 방연수건 등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활 속 소형리튬이온전지 충전 방식 및 안전 수칙

2. 기기별·장소별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

3.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의 거짓 광고 및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 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성 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2호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의 운행 대상마을 선정 기준과 탑승요금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교통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복택시 운행마을 선정 기준을 정비(안 제3조).

나. 행복택시 이용요금 체계를 개편(안 제4조).

다. 행복택시 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5조의2).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청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6. 11.

발 의 자: 최청환, 최태양, 오문섭, 정순영, 김상균, 송현미, 이은진 (7명)

1. 제안이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의 운행 대상마을 선정 기준과 탑승요금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교통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택시 운행마을 선정 기준을 정비(안 제3조).

나. 행복택시 이용요금 체계를 개편(안 제4조).

다. 행복택시 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기 타: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행복택시 배차가 열악한 지역을 마을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이용요금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를 “이용요금 등 시장이 행복택시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행복택시 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원활한 행복택시 이용을 위하여 행복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콜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복택시 이용방법 안내
2. 행복택시 이용지역 배차
3. 행복택시 이용관련 민원사항 접수

③ 콜센터 설치·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현저히 개선되어”를 “개선되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①----------.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도보 거리가 4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운행 횟수가 1일 5회 이하인 마을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행복택시 배차가 열악한 지역을 마을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행복택시 운영 등) ①·② (생 략)	제4조(행복택시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복택시 탑승자(이하 “탑승자”라 한다)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탑승자 부담요금은 대중교통 이용	③----------.

요금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이용요금 등 시장이 행복택시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행복택시 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원활한 행복택시 이용을 위하여 행복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콜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복택시 이용방법 안내 2. 행복택시 이용지역 배차 3. 행복택시 이용관련 민원사항 접수 ③ 콜센터 설치·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8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대중교통 여건이 현저히 개선되어 제3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운송실적을 확인하여 이용이 저조한 마을에	② ---------- 개선되어 ---------- ---------- ----------

대하여 행복택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 ----------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성 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3호

「화성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강제금 감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대수선(증설·해체 등)을 진행한 경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과도한 행정 제재를 지양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재산권 확보와 주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수선을 한 경우 2분의 1 범위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함(안 제43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6. 11.

발 의 자: 김상균, 최태양, 정순영, 송현미, 최청환, 오문섭, 최은희 (7명)

1.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강제금 감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대수선(증설·해체 등)을 진행한 경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과도한 행정 제재를 지양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재산권 확보와 주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수선을 한 경우 2분의 1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4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기 타: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 등 대수선을 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1.·2. (현행과 같음)
1.·2. (생 략)	
<신 설>	3.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 등 대수선을 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성 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4호

「화성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2. 제안이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화성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절차에 따라 선별하고 적법한 사용 승인을 부여하기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그동안 건축물 활용에 제약을 받아온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화성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김상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6. 11.

발 의 자: 김상균, 최태양, 정순영, 송현미, 최청환, 오문섭, 최은희 (7명)

1. 제안이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화성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절차에 따라 선별하고 적법한 사용 승인을 부여하기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그동안 건축물 활용에 제약을 받아온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화성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기 타: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특정건축물을 선별하고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른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까지 적용한다.

제4조(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의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정건축물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상담
2. 현장 조사서 작성 등 기술적 지원
3.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를 면

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8년 6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성 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5호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화성시의회 의원의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개정에 관한 사항 (안 별표2)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문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11. .

발 의 자 : 오문섭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화성시의회 의원의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개정에 관한 사항 (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현행 조례(별첨1)

나. 관계 법령(별첨2)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월 정 수 당	
2027년	월 3,421,240원 (연 41,054,930원)
2028년	2027년도 월정수당에 202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 합산한 금액
2029년	2028년도 월정수당에 202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 합산한 금액
2030년	2029년도 월정수당에 202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 합산한 금액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6호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환경 개선, 인식개선 및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지원대상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인가구 지원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항)

나. 1인가구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2항)

다.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제11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11. .

발 의 자 : 김상균의원

1. 제안이유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환경 개선, 인식개선 및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지원대상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가구 지원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항)

나. 1인가구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2항)

다.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제11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커뮤니티”를 “사회관계망 형성, 공동체 활성화 및 커뮤니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 지원 사업

8. 1인가구 인식개선 지원 사업

9. 중장년 1인가구 맞춤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소를 두거나,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하고 화성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1인가구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공동체 활성화 및 커뮤니티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 지원 사업
<신 설>	8. 1인가구 인식개선 지원 사업
<신 설>	9. 중장년 1인가구 맞춤 지원 사업
7.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주소를 두거나,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하고 화성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로 한다.
<신 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

	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1인가구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7호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경로당 설치에 적합한 건축물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시설 조성 및 원상복구 지원 비용 범위 신설 (안 제11조)

나. 경로당 설치를 위한 시설 조성 지원 요건 및 범위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3)

다. 지원 제외 대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0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jgy1293@korea.kr
- 전화: 031-5189-3912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11. .

발 의 자 : 이은진, 최은희, 권영학, 위영란, 신미정, 김기현, 임채덕, 박진섭, 오문섭, 고병태, 이민희, 김정주 의원(12명)

1. 제안이유

경로당 설치에 적합한 건축물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시설 조성 및 원상복구 지원 비용 범위 신설 (안 제11조)

나. 경로당 설치를 위한 시설 조성 지원 요건 및 범위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3)

다. 지원 제외 대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로당 설치에 적합한 건축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존 건축물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인허가·용도변경·리모델링 등 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경로당 설치를 위한 시설 조성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경로당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 지원을 통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2. 경로당 이용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등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에 필요한 설계 및 인허가 비용

2. 경로당 설치 기준 충족을 위한 구조·설비·내부시설 등의 개선 비용

3.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4. 경로당 이전에 따라 기존 시설을 철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경로당 설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건축물의 적정성, 이용자의 안전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4(지원 제외)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원 대상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경로당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 또는 시설개선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에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로당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경로당지원) ①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경로당 설치에 적합한 건축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존 건축물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인허가·용도변경·리모델링 등 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경로당 설치를 위한 시설 조성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경로당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 지원

	을 통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축물 2. 경로당 이용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등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에 필요한 설계 및 인허가 비용 2. 경로당 설치 기준 충족을 위한 구조·설비·내부시설 등의 개선 비용 3.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4. 경로당 이전에 따라 기존 시설을 철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경로당 설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건축물의 적정성, 이용자의 안전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4(지원 제외)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원 대상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경로당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 또는 시설개선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에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8호

「화성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과다섭취를 예방하고 올바른 섭취 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교육·홍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과다섭취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신설 (안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0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jgy1293@korea.kr
- 전화: 031-5189-3912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11. .

발 의 자 : 최은희, 임채덕, 김기현, 신미정, 위영란, 권영학, 고병태, 김정주, 이은진, 김창겸, 김상수 의원(11명)

1.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과다섭취를 예방하고 올바른 섭취 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교육·홍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과다섭취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신설 (안 제5조)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과다섭취 예방 및 올바른 섭취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 (생 략)	제5조(지원사업 등) ①----------. 1. ~ 4. (현행과 같음) 5.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과다 섭취 예방 및 올바른 섭취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9호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관내 농지에 대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4호)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jiseon221@korea.kr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6. 11.

발 의 자: 이민희・고병태・김창겸・
임채덕・김미영・김정주・
최청환의원(7명)

1. 제안이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관내 농지에 대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4호)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내 농지에 대한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등 토양 개량 및 지력 증진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관내 농지에 대한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등 토양 개량 및 지력 증진을 위한 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30호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급식 수요에 대응하고,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와 소비 촉진을 통해 재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재단의 위탁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3항제2호)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jiseon221@korea.kr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6. 11.

발 의 자: 최은희의원

1. 제안이유

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급식 수요에 대응하고,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와 소비 촉진을 통해 재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재단의 위탁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3항제2호)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기업급식 등 확대를 위한 사업

제4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부서의견)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급식·공공급식 활성화 사업	2.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기업급식 등 확대를 위한 사업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단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6. 3. 10, 개정 2026. 10. 7)	③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31호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수행하는 노사민정 협력증진, 지역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제3항)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jiseon221@korea.kr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영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6. 11.

발 의 자: 위영란・조정옥・박진희・
배현경・정명희・유상희・
김창겸・박진섭의원(8명)

1. 제안이유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수행하는 노사민정 협력증진, 지역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제3항)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운영
2. 노사민정 협력 증진 및 역량강화사업
3.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 사업
4. 노사화합지원 및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사무국) ①·② (생략)	제8조의3(사무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운영 2. 노사민정 협력 증진 및 역량강화사업 3.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 사업 4. 노사화합지원 및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32호

「화성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기후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세부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후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및 제6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jiseon221@korea.kr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김상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6. 11.

발 의 자: 김상균・최태양・이민희・
김상수・김창겸・이은진・
최청환의원(7명)

1.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기후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세부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후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및 제6조)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농어민 등을 말한다.
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이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을 말한다.
4. “기후격차 해소”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호. 지원, 정책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빈부·세대·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후격차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
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이행대책
4.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
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의 이행점검은 해당 계획의 이행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세부사업)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및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건강·보건 문제에 관한 사항
3.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 성 명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